

자동차 직권말소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

「자동차관리법」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강제처리(폐차)된 자동차에 대하여 「자동차관리법」 제13조제3항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자동차를 직권말소 하고 이를 통지 하였으나, 송달이 불가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22. 6. 24.

서대문구청장



1. 공고기간 : 2022. 6. 24. ~ 7. 8.
2. 공고대상

연번	자동차 등록번호	소유자	주소	말소일	비고 (반송사유)
1	66주4442	서*배	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명지대1나길 **	2022. 6. 13.	보관기간 경과

3. 공고내용 : 자동차 직권말소 통지
4. 법적근거 : 「자동차관리법」 제13조
5. 문의사항 : 서대문구청 교통행정과(☎ 02-330-8682)